

「교사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논문집 투고규정 제5조(게재결정)와 논문심사규정 제7조(기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편집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교사교육연구」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교사교육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투고된 논문의 전공과 관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의거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3인의 심사위원 선정
 - 논문에 대한 심사
 -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확인 및 판정
 - 기타 학회지 발행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3조 (편집위원 선정 기준) 교사교육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4년제 대학·대학원 전임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 위촉 절차)

1. 편집위원장은 사범대학 학장이 위촉하고,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사교육연구」 발행규정

제1조 「교사교육연구」는 과학교육연구소의 학회지로서 교육에 관련된 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분야에서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을 전공하는 교수 및 연구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본지는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교과교육학 중에서 교사교육과 관련되는 논문, 총설, 자료 등을 게재한다.

제4조 논문 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 위촉한다.

제5조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사내용에 대한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본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전송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제7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